

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8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0. 2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,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취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적격성·영예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, 정부 포상 기준을 따르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)
- 나.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- 다. 포상시기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(안 제11조제2항)
- 라.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 신설(안 제14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
- 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4155호, 2025. 8. 19.)

라. 입법예고: 2025. 8. 18. ~ 2025. 9. 8.(21일간) / (의견없음)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후단 중 “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”를 “기관·단체에게도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포상절차)”를 “(포상절차 및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실과소장”을 “실·과·소장, 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”를 “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수여하여야”를 “수여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 (포상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
2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3.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,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
4.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13조 중 “등재하여야”를 “등재해야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“(시행규칙)”을“(포상의 취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. 다만,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
3.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·구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기관·단체에 수여한다.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이외의 거주자나 <u>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</u>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 (포상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관·단체에게도</u> -----.</p>
<p>제10조 (<u>포상절차</u>) ① 포상(상장 제외)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<u>실과소장</u>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. 다만,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표창장은 <u>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 (<u>포상절차 및 기준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실·과·소장, 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수여해야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0조의2(포상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에 있는 자</u> <u>2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</u> <u>3.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</u> <u>4.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</u>
<p>제11조 (포상시기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 (포상시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 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<u>등재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13조 (포상대장의 등재) ----- ----- ----- <u>등재해야</u> ----- --.</p>
<p>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4조(포상의 취소)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. 다만,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.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.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<p>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.</p>
<p><u><신설></u></p>	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단의 내부규정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포상 심사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총무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이유정
- 연락처: (052)290-3174